



제 428회 국회(임시회)
제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장에게 권한 위임 허용 근거 신설>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10954호)

2025. 8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천우정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1.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장에게 권한 위임 허용 근거 신설	2

I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 부

나. 제 출 일 : 2025. 6. 20.

다. 회 부 일 : 2025. 6. 2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,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장에게 권한 위임 허용 근거 신설

가. 개정안 요지

-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6조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56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	제5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권한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, 업무의 일부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·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가유산청 내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위임할 수 없어 행정 수행의 유연성과 조직 내 업무 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.
- 특히,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업무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, 국가유산청 본청뿐 아니라 그 소속 기관이 지역적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므로, 실무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음.
-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,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현대문화유산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.

- 참고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과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유산청 소관 다른 법률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.¹⁾
-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궁능유적본부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·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⁾.

문 의 처
02)6788-5379

1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·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2) 국가등록문화유산('25.6월 현재 총 977점) 중 궁능유적본부장 소관 2점: 창경궁 대운실, 서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